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검사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부, 시·도, 공단,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8호를 개정('20.10.16)하였으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70% 기준 미달 시 부적합)가 '21.4.17일부터 시행됩니다.
3.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현장의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선팅정비 (제거 및 재시공) 집중이 예상되고 있으며, 선팅정비 지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경과 우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선팅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연장 조치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운영 시설에 선팅정비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연장가능 사실 홍보
-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 선팅검사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가능 사실 안내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특별시(택시물류과장), 부산광역시(택시운수과장), 대구광역시(택시물류과장),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장), 광주광역시(대중교통과장), 대전광역시(운송주차과장), 울산광역시(광역교통정책과장), 경기도지사(광역교통정책과장), 강원도지사(교통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통정책과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무관대우 **주재덕** 사무관승진예 정자 **배한후** 자동차운영보험 전결 2021. 4. 15. 과장 **이중기**

협조자

시행 자동차운영보험과-2457 (2021. 4. 15.)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59 팩스번호 044-201-5587 / jujd77@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